

영등포구의회
제166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檢 討 報 告 書



2012. 5. 7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 朴 鍾 成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21호로 2012년 4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
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(안 제23조)
- 나. 그 밖에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과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
기준’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2조 외 16개조)

4. 검토의견

- 가.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이 일부 개정되어
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.
- 나. 주요내용을 보면
 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의 일관
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
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임(안 제23조).

- 이는 「영유아보육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 선정에 대한 관리 기준을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에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으로써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시행되어 오던 어린이집 위탁 선정의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명문화한 것임.
- 그 밖의 사항은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5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서울시 자치구 조례 개정 현황 : 서대문구

관 련 법 령

○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제24조의2(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)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.

[본조신설 2012.2.3]

[별표 8의2] <신설 2012.2.3>

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(제24조의2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 까지 선정한다.

나.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,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.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다.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. 다만,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1. 일반기준

가.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 까지 선정한다.

나.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,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.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다.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. 다만,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라. 신청자격

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,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·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.

1)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2)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

3)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

- 4)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- 다.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(영아·장애아·다문화아동·시간연장형 보육 중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바.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. 다만,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 2제 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.
- 사.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.
- 아. 심사결과,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.

2. 심사기준

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,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심사항목	항목별 점수
가. 어린이집 운영계획	40
나.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	35
다. 운영체의 운영실적	10
라. 운영체의 공신력	10
마. 운영체의 재정능력	5
합계	100

3. 심사결정

- 가.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·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이 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.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.
- 나.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(어린이집 운영계획), 나목(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), 다목(운영체의 운영실적)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.

4. 그 밖에 공고,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,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